

급여제공 적정성 확보들위한

장기요양 Start-UP 지원

2021. 4월 발행



본 매뉴얼 내용은 관련 법령, 고시 등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 림

■ '장기요양 Start-UP 지원' 매뉴얼이 발간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정받는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 과정 이해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관련 법령,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요 사항만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합리적인 판단과 함께 정확한 적용이 중요합니다.

■ Start-UP 지원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수준 향상

● 끝으로 New 평가 파라다임을 공유하여 Start-MP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관 스스로 관리・평가하여 보다 나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ନ୍ଥ 목 차

- 01 장기요양급여 평가
- 02 시설급여
- 0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04 주야간(단기)보호
- 05 지정갱신제도
- 06 현지조사제도

제1장 장기요양급여 평가

- 명가 목적
- 2 관련 법령
- ③ 평가주기
- 4 수행체계 및 절차

-	5	-
	5	



평가 목적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 & 알 권리 충족 적정급여 제공 평가 및 결과 공개 기관 이용자 평가자 투명한 기관운영 등 · 인권보호 받을 권리 •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 종사자 전문성 양상 • 욕구에 따른 서비스 선택 편리 • 신뢰성과 꾼정성 왁보 노력 • 이용 정원 적정성 유지 잔존능력 유지*개발 위한 • 충분한 정보 제공 • 쾌적한 시설 • 완경 제공 서비스 받을 권리 등 • 원알한 상호관계 유도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객관적 · 합리적 평가기준 장기요양기관 Start-UP

평가 NEW 패러다임

이용자 중 심	평가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
	평가는 기록·수치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여 이용자 중심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평가 주체가 되어 피드백하는 과정!
주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스스로 평가 주체가 되어 표준화된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피평가자・평가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
협력	최고의 시설만 선정하거나 규제 등을 위한 것이 아니며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을 견인하고자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 O 같은 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O 같은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같은 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 O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 O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공고 요양심사실 제2021-제3호「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평가 주기

2009-2015

- 2009년 신청 평가
- 2011년 의무평가, 2년
- 2015년 절대평가, 3년

2018

- 정기평가,시설급여
- 개방형 평가
- 의부평가자 도입
- 관찰*면담 도입

2019-2021

- 정기평가
- 2019년 재가,짝수
- 2020년 재가,홀수
- 2021년 시설급여

2022-2024

- 정기평가
- 2022년 재가,짝수
- 2023년 재가,홀수
- 2024년 시설급여



Don't Forget!

관련법령 및 평가제도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행체계 및 절차

I.	평가위원회	o 정기(수시)평가 계획 심의
의견수렴	지표자문위원회	○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자문 및 개선안 검토
계획수립	공단본부	○ 평가협의체 구성 및 전반 의견수렴, 평가자 교육 및 홍보 등○ 평가계획 수립 총괄, 기관과 평가 간 이견 조정
Ⅱ. 평가 계획	자문위원회	○ 지역본부별 자문위원회 ➡평가순서 결정 참여, 이견조정 ○ 평가업무 지장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현장 참관
매뉴얼공고	지역본부	○ 외부평가자 선정 선정(공무원, 학계, 현장 전문가 등) ○ 1차 상·하반기 일정 통보(계획 공고 후 15일 이내) ○ 2차 평가 예정일 통보(평가 예정일 7일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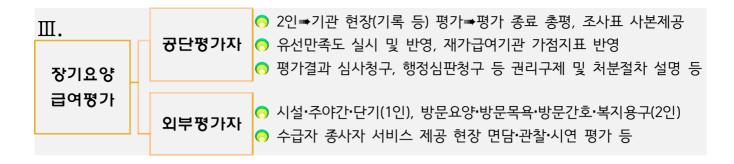
평가 지표 및 매뉴얼

- ▶ **평가지표**: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등 5개 대분류 영역 구분 ➡ 대분류별 2~4개의 중분류 구분 ➡ 중분류별 소분류 구분(재가급여 5개 대분류 영역 외 별도가점 영역포함)
- ▶ 평가매뉴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가 일반 사항과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평가기준, 평가척도 등으로 구성,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 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참조

시설급여기관 재기급여기관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기관운영 기관운영 정보관리 자원 활용 •위생 및 감염관리, 시설 및 •시설 및 설비관리, 위생 및 환경 및 안전 환경 및 안전 설비관리, 안전관리 감염관리, 안전관리 • 수급자 권리, 기관 책임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보장 •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급여제공과정 •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제공 급여제공과정 •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제공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만족도 평가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만족도 평가 별도가점 • 가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평가 관련 주요 공고

○ 알림	남자료실 >	· 알림방 > 공지사항	
		시 설 급 여	
	게시번호	제목	등록일
	60633	2021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변경사항 반영 안내	21.03.29.
	60616	2021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 관련 일부 변경사항 안내	21.02.26.
	60608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 다빈도 Q&A 사례집	21.02.19.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한시적 적용방법(5차)	21.02.16.
평가	공지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21.01.19
매뉴얼 +	60586	2020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	21.01.12.
Q&A	60561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4차) 안내	20.10.27
G.G	60509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3차) 안내	20.06.11
	60451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2차)	20.02.21.
	6043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Q&A	20.02.04.
	60423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20.01.10.
	60221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18.01.19.
○ 종사7	사마당 > 기관	반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60035	2021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코로나19 한시적 적용방법	21.02.18.
동영상	60033	2021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	21.01.18.
	60011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교육자료(Q&A)	18.01.24.
		재 가 급 여	
	게시번호	제목	등록일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한시적 적용방법(5차)	21.02.16
	60581	2020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Q&A 사례집 게시	20.12.30
	60561	코로나19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4차) 안내	20.10.27
평가	60509	코로나19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3차) 안내	20.06.11
매뉴얼	60451	코로나19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2차)	20.02.21
+ Q&A	6043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20.02.04
GGA	60424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	20.01.16
	60412	2019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Q&A 2차 사례집 게시	19.12.17
	60340	2019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Q&A 사례집 게시	19.03.04
	60320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19.01.21
○ 종사기	사마당 > 기관	반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드여나	60028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Q&A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	20.01.16
동영상	60024	2019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	19.01.29



자체평가 및 평가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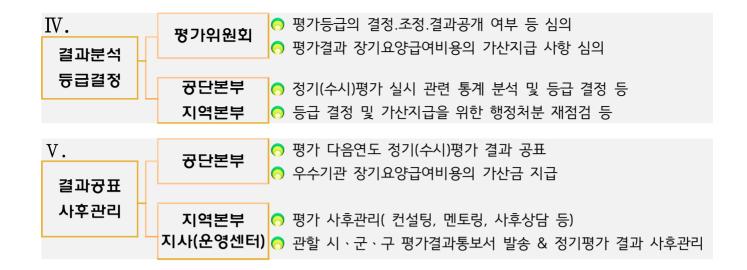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평가

- > 자체평가(자가진단➡개선)
- > 평가게시판(질의➡응답)

기관평가 흐름도 수급자 · 종사자 평가 흐름도 • (시설) 평가자 3인 기관 방문 장기요양 • 외부평가자 2인 수급자 종사자 방문 수급자, 기관방문 • (방문재가) 공단평가자 2인 기관 방문 ※주야간·단기 수급자·종사자 평가 및 종사자 방문 복지용구 종사자 평가 기관평가시 수행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 신분증 및 관계자 면담 안내문 제시 ➡ 평가개요 설명 • 평가협조 안내문, 외부평가자 신분증 평가대상자. 보호자면담 제시 및 평가 개요 설명 • 기관대표자 또는 관계자 입회하 실시 평가 • 평가문항별 근거자료 및 현장 확인 항목 • 수급자 종사자 관찰 면담 등 평가 실시 평가 ※(시설, 주야간·단기보호) 공단 기관평가. 확인 항목 • 수급자 면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외부평가자 면담 관찰 시연 평가 등 실시 확이 의견 참고 • 평가결과 상담 및 총평 총평 평가 ※(시설·주이간·단기) 평가자 3인. (방문재가) •평가 완료 후 종결 종결 확인서명 공단평가자 2인 + 대표자 or 관계자 서명/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평가결과 • 기관에 기관평가 조사표 사본 제공 조사표 전산등록 수급자 종사자 평가결과 전산등록 제공 •기관 평가 결과 전산등록

권리구제 및 처분절차

- ▶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심판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 안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37조제1항3의 7호와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별표2 제2호 가목 11)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2019.6.12.개정> 참조
- ▶ **평가자료 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한 경우 ➡** 같은 법 제69조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2020,7,14,개정> 참조



평가등급 결정 및 조정

- ▶ 평가위원회 개최(정기평가 종료 다음연도) ➡결과 보고, 등급결정 및 가산금 지급 등 심의·의결
- ▶ 평가등급 결정 5등급(A~E)절대평가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

A(최우수)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B(우수)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C(양호)등급: 평가점수 7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D(양호)등급: 평가점수 6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E(미흡)등급: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 ▶ 등급 조정사유 발생한 기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 ▶ 조정사유 ➡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부당청구, 노인 학대, 거짓자료 제출 등

평가등급 공표 및 관할 지·자·체 통보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 공개,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 통보
 - 평가받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절대평가등급 공개
 - 평가결과 표기: 평가등급(A~E), 신설기관 등 평가불가 기관 및 미실시 사유, 거부·방해 또는 기피, 자료제출 거부 기관
 -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영역별 수준(★,★) 및 환산점수 표기 등
- ▶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 통보
 - ➡'인력기준, 시설기준, 식품위생관리, 감염병관리, 노인인권보호' 지표 미흡인 기관 통보

제2장 시설급여

- 1 주기별 업무 수행
- 2
 대분류
- ③ 기관운영
- 4 급여제공과정

-	13	-	

1

주기별 업무 수행

● 연 1회 이상

기관

-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정비
- 전년도 사업계획 평가 & 재무회계 결산자료 제출(지자체)
- ▶ 사업계획 & 예산수립 ⇒ 계획에 따라 운영
- □ 기관정보 게시(지자체+공단 홈페이지)
- ⇒ 변경사항 지체 없이 수정 신고
- ▶ 시설기준 용도에 맞게 사용 준수
-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 ▶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법적대행업체)
- ▶ 감염병 유행 및 발생시 대응체계 수립

종사자

- ▶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 준수
- ▶ 신규 입사자 근무 시작 일까지
- ⇒ 근로계약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 14일 이내 교육(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
- 5대보험 가입 및 완납, 고충처리 및 퇴직금 지급
- ▶ 모든 종사자 건강검진 및 근골격계 질환 검사+조치
-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교육
- □ 역량강화 외부 교육(시설장과 직원)

수급자

- ▶ 신규 수급자 급여개시 전 감염병 건강진단
- ⇒ 입소한 모든 수급자(결핵+건강진단)
- □ 지역사회 주최 행사 연1회 이상 참여
- 🏂 통합사정(욕구사정, 낙상, 욕창, 인지)
- ⇒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물리치료 평가 등 반영
- 🎤 급여제공계획(공단 제출) 및 물리치료 계획 수립
- ⇒ 인지기능 및 여가프로그램 수립
- 🏃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 🏃 급여제공 및 프로그램 등 계획에 따라 제공
- 🏃 급여제공 결과평가(반기별 or 연1회 이상)
- ⇒ 프로그램 의견 수렴, 물리치료 제공결과 반영
- ⇒ 30일 이내 재작성
- ♣ 사례회의 실시 및 결과 ⇒ 30일 이내 급여 반영

○ 반기별 1회 이상

기관

- ▶ 종사자 대표 처우개선 의견
 - ⇒ 운영위원회 청취 ⇒ 기관은 연1회 반영 조치
- ▶ 수급자 · 종사자 재난상황 대응훈련

수급자

- □ (10인 미만)사례회의 및 결과 ⇒ 30일 이내 급여 반영
- □ 급여제공 결과평가 후 변경 사항
 - ⇒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
- ▶ 보호자 소통노력 (소식지, SNS 회의 등)

● 분기별 1회 이상

기관

- ▶ 운영위원회 회의 실시
- ▶ 모든 수급자 종사자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 ▶ 전문업체 실·내외 소독,
- □ 의약품 분기별 1회 이상 유효기한 & 상태 점검

● 매월 1회 이상

기관

- ▶ 소화설비 & 경보설비 매월 점검
- ▶ 전기 및 가스 매월점검 (직원 or 전문업체)

수급자

- ▶ (10인 이상~30인미만) 사례회의 및 결과 30일 이내 급여 반영
- ▶ (욕창발생위험&고위험&욕창발생) 수급자
 - ⇒ 분기별 1회 욕창위험도 평가 (예)Braden scale 18점 이하 자
- ▶ 수급자 및 보호자 상담 분기별 1회 ⇒ 의견 반영 연1회 이상
- ▶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 ▶ 인지·여가프로그램 관련 분기별 1회 이상 의견수렴
 - ⇒ 연1회 이상 반영하여 프로그램 변경 등

수급자

- (30인 이상) 사례회의 및 결과 ⇒ 30일 이내 급여 반영
- ☑ 계약의 및 협약의사 수급자별 월 2회 진찰

○ 매일 또는 수시

기관

- ▶ 자원봉사 주1회 이상,
- ▶ 주방 및 집기류 주1회이상 소독
- ☑ 생활환경 매일 일상소독
- ▶ 간호비품 소독
- □ 퇴소나 전원시 급여 이용 종료 상담
- ⇒ 연계기록지 작성 및 제공
- ▶ 신체제재 사유 발생시 가족에게 통지 ⇒ 기록 실시

종사자

- □ 급여제공계획 및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
-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씻기
- 주1회 목욕 제공(전·후 상태변화 기록)
- ▶ 야간보호(매일 수급자 및 안전점검)
- ▶ 수급자 기능회복훈련 실시

수급자

- □ 급여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연속 72시간 집중배설 관찰
- ➡ 응급상황 및 감염병 유행 발생 조치
- ▶ 인지기능 프로그램 그룹별 최소 1회 이상, 주3회
- ▶ 여가활동 프로그램 그룹별 주 1회 이상
 - ♣ 욕창발생 <mark>위형 수급자</mark> (예:Braden scale 18점 이하자), 편마비 & 인지기능 저하 등 체위변경 도움 필요자
 - ⇒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 🏂 욕창발생 고위형 수급자 (예:Braden scale 12점 이하지)
 - ⇒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 ⇒ 욕창발생 여부 1일 1회 이상 관찰 & 기록
 - 🎤 욕창 발생한 수급자
 - ⇒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 ⇒ 욕창변화 주1회 이상 욕창관리 & 기록 (수급자명, 일자, 부위, 크기, 조치내용)
 - ※시설급여제공매뉴얼 제2권 Ⅱ.급여제공과정 라.건강과 간호관리 3.간호관리 1)욕창관리 참조



2 평가지표 대분류

평가방법	기를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전신 공단 전산자료 확인 연장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연합 시인 직원 및 수급자 대상 관찰*면담*시연 유선 보호자 유선 만족도 확인				
평가대상	기관원	<u> </u>	수급자	세사종	
평가방법	기록, 전선	난, 현장	면담, 관찰	면담, 관찰, 시연	
대분류 ↓	기관 및 종사자관리	수급자관리			
기관 운영	·운영규정, 운영계획 및 평가 ·운영위원회, 인력기준 ·인력추가배치(공생제외) ·경력직, 인적자원개발 ·건강검진, 직원건강관리 ·직원복지향상 ·직원권익보호 ·지역사회자원 활용			・인적자원개발 ・직원건강관리 ・직원복지향상 ・직원권익보호	
환경 안전	·시설기준, 특별침실 ·안전*쾌적한 환경조성 ·낙상예방 환경조성 ·식품위생관리 ·감염관리활동, 감염병 관리 ·소방시설, 전기가스설비 ·재난상황대응 ·응급상황대응, 야간보호			·감염관리활동 ·감염병관리 ·재난상황대응 ·응급상황대응	
수급자 권리 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노인인권보호	·수급자(보호자)참여강화	•존엄성&사생활 보장	·수급자(보호자)참여강화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노인인권보호	
급여 제공 과정	·간호 및 의료서비스 ·투약 및 약품관리	· 통합적 사정 · 급여계획수립 및 제공 · 급여제공 결과평가 · 사례관리 · 수급자 청결서비스 · 식사제공, 배설관리 · 욕창예방, 욕창관리 · 인지기능증진서비스 · 여가활동서비스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 청결서비스 ·식사제공 ·욕창예방 ·투약 • 약품관리 ·기능회복훈련	
급여 제공 결과	•평가자 의견	·등급현황, 욕창현황 ·유치도뇨관 현황 ·배설기능 현황	・노인인권보호 ・신체청결상태 ・유선만족도		



기관 운영

구분

지표별 평가내용

▲운영규정

기록 현장

- •11가지 운영규정 비치하고 따라서 운영
- •개정사항 발생 시 개정방법 및 절차 따라 개정
- ※ 노인복지법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 조직·인사, 급여, 회계, 물품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등 비용변경 및 절차
-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 특별한 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
- 의료 필요 구체적 처리절차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면책범위 운영규정 개정방법 절차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리

기관 ▲운영계획 및 평가

TE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총수입, 총지출 포함) ➤ 계획 따라 기관운영 ➤ 비용 지출 관련 자료 확인
- •평가지표 관련 사업(교육, 프로그램, 복지포상 등) 등 사업 결과 평가 ➤ 차기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 ▶계획 변경 & 프로그램 조정 등 반영

★운영위원회



- •적정한 구성,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 회의록 작성 (외부인사 1인 이상 참석 필요, 참석자 발언내용)
- •회의결과 기관운영 등에 연1회 이상 반영

[참조]•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외부 3 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 위원 중 후원 자 대표, 지역주민 합하여 2명 초과하여 구성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6호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인력기준 및 운영규정(사업계획)에 따라

✓인력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6.직원의 배치기준 준수

✓인력 추가배치

전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 지표적용기간 월 별 \times 100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합산 (소숫점 첫째 지표적용기간 월 별 자리 바옥리) 가산점수 인정범위 최대값의 합산

▲ 경력직

저사

기록 현장

-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 갖춘 인력 비율
- •비율=(24개월 이상 및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100

인력 운영

☑인적자원개발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마련 및 비치
- •매년 시설장 및 직원(공생 제외) 역량강화 교육 실시 여부 기록 확인
- 면달 ◆신규 직원 14일 이내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 업무내용 교육실시 및 내용 숙지여부
- •모든 직원 연1회 이상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교육실시 여부 및 내용 숙지 여부
- ♥매년 시설장·직원 역량강화 위한 교육 받았는지 면담

☑건강검진

기독전산

- •모든 직원: 직원, 대표자겸 직원 or 시설장, 고용된 시설장 포함 직원(판정 & 발행일자 확인) >매년 결핵검진 & 5개 영역(계측,요,혈액,영상,판정)
- > 충족하는 검진 결과 기관 제출 •신규 직원: 근무 시작 일자까지 검진서류 제출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직원건강관리

III

- •모든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 연1회 실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표 등
- 증상有>적절한 조치(체조, 스트레칭, 병원치료등) 기록

(면담) 현장

- ●직원 건강관리 위해 추가노력 확인(최소 2가지 이상)
- ●건강관리 위한 보조도구 제공, 체력단련활동, 의료지원 등 ➤ 직원과 면담 확인하고 보조도구 등 현장 확인

지표별 평가내용

▲직원복지향상



- •5대보험 가입·완납: 기관 사업장 사업 개시 월부터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신청서(동의서), 근거자료 & 지급명세서 확인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한 기록

면당 ●평가결과 가산금 지급 받은 기관만 확인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 직원처우개선에 사용 여부
-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2가지 이상 복지제도 ➤ 운영하는 것을 직원이 아는지 면담
- ※(예시) 학자금지원, 경조사지원, 해외연수, 교육지원, 훈련지원, 단체(상해)보험가입, 동호회지원, 상품권 (복지포인트)지급,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등

직원 복지

▲직원권익보호

JE

- •직원 의견 및 고충처리절차 마련 ➤ 운영
- ▶기록 확인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 •운영위원회 회의 반기별 1회 이상
- ▶시설 종사자 대표 참여▶ 처우개선, 권익향상의견 파악▶ 연 1회 이상 반영▶ 기록 확인

면달 ● 직원은 대표자(설치·운영자)와 필수 항목 포함된 근로계약 체결

- →이에 따른 보수 지급 & 보수명세서 제공 여부 -필수항목: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임금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고
 -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면담

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

- •(시설) 자원봉사자 주1회 이상 or 2주 1회 이상 or 월 1회 이상 정기적 활동
- •(공생) 자원봉사자 월1회 이상 or 2개월 1회 이상 or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 활동
- •개인 또는 단체 정기적 방문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자원봉사 포털 전산 또는 활동일지 확인
- •사회봉사명령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시설기준 및 운영규정(사업계획)에 따라

Ϫ시설기준

현장

기를 전산

- •지자체 신고된 각실 기준≫ 용도 맞게 운영 여부
- •합숙용 침실 1실 정원 ➤ 4명 이하
- •치매전담형기관 치매전담실 시설기준 충족여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3.시설기준 준수 여부

시설 기준

▲특별침실

기록 현장

- •특별침실 표찰>내부환경 조성>사용수칙 따라 운영
- •환경:위생용품(손소독제, 마스크, 일회용장갑),파티션
- •사용수칙:사용대상, 사용절차, 사후 절차, 유의사항
- •다인실 특별침실로 사용 ➤ 커튼, 파티션 별도 구비 (다른 수급자와 분리)
- •이동식 칸막이≫수급자 사생활 보호용과 별도 구비

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현징
- 위험요인제거>전기콘센트(플러그형 안전마개)채광, 환기, 온도, 습도, 청소, 도색, 도배, 바닥재 등
- 모든 외부출입구&계단→잠금장치 & 자동열림장치주방→잠금장치, 수납공간(칼, 가위 등),가스밸브 안전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수급자 눈높이(바닥~150cm사이)
- •지표13(시설기준) 충족>내부 안내표지판, 각 층 위치도, 각 실별 표찰 부착

고성 조성

현장

- •수급자 접근 가능한 곳➤ 내부 안전손잡이 설치 (샤워기, 욕조 보조봉, 세면대 포함)
- •미끄럼방지 처리≫미끄럼방지 타일 or 매트등
- •문턱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
-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 복도 2대 교차
- ➤ 침실 내 화장실 출입 가능 여부 등

위생 관리

▲식품위생관리

기록 현장

- •주방 및 주방 집기류 주 1회 소독 실시
- •급식 위탁≫기관 내 식품 보관 & 식기 등 사용 ≫식품 유통기한 & 주방 및 집기류 소독 후 기록
- •식당, 조리실, 식품보관실, 냉장·냉동고(침실, 거실 등 냉장고 포함) 청결 확인
- •조리실 근무 직원 위생모 착용, 복장 청결 확인

지표별 평가내용

기록 현장

- •주출입구 손소독제(세면대)>유통기한 만료, 훼손 등
- •기관 내 모든 세면대 손 세정제 비치≫손 씻기
- •간호비품 소독관리 및 청결유지
- •의료폐기물 분리 배출(공생 제외)
- 전문 업체 배출(계약서, 지출증빙 등 관련 자료)
- •실내·외 전문소독(살균,살충,살서)>분기별 1회 이상

관찰 면달 ●직원 서비스 제공 전·후 손씻기 관찰

- -식사(간식)보조. 기저귀 교환. 욕창간호. 창상간호. 소변비우기 -화장실. 코풀기·기침·재채기, 의료폐기물·쓰레기, 외출 후 등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지 않고 일회용 장갑만 교체시 불인정
-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 매일 실시
- -생활환경: 자주 손닿는 부분(출입문손잡이, 안전손잡이, 난간, 문고리, 침대, 휠체어, 스위치 등)

-소독제: 소독부위 및 장소 적절한 소독제(치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 안전사용 수칙 준수

감염 관리

▲감염병관리

- •결핵검진 포함 감염병 건강진단
- ➣신규수급자 입소 전 1개월 이내 결과 확인 후 입소 ▶입소 후 모든 수급자 연1회 이상 실시, 결과 확인
- •감염병 유행 및 발생시 대응체계≫기관 맞게 수립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60394)

[면탈]•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숙지여부

- •직원이 기관에서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 또는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면담
- -감염병유행: 면회제한, 발열확인, 예방접종, 실내소독, 교육, 방역지침 준수 등
- -감염병 발생 : 환자 증상 사정, 특별침실 격리,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

▲소방시설

기록 현장

- •소화설비, 경보설비 갖추고 매 월 점검
- ➤소화기,(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속보설비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직원 or 외부전문업체)
- •작동기능점검 연1회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방 안전관리자 or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 •비상구(피난 가능한 직통계단, 발코니 등)
- >물건 적재된 경우 불인정
- •피난안내도 & 대피경로 부착
- •유도등 항상 켜져 있어야 함



관리

아전

▲전기가스설비

- 현장
- •전기, 가스설비 안전점검 연1회(스티커 or 검사필증)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or 법적 대행업체 점검만 인정
- •전기, 가스설비 매월 점검, 화재위험요인 제거
- -각각 선임된 안전관리자 or 직원 자체점검, 외부 전문업체 점검 -전기: 차단기, 전열, 조명,콘센트, 개폐기(스위치), 퓨즈 등
- -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계량기, 중간밸브, 가스누출 상태 등

☑재난상황대응



- •재난상황 대응방법 매뉴얼 마련
- •반기별 1회 재난상황 고려 직원이 입소자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하는 대응훈련 실시
-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면답 시연

-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 직원 면담 사항 ➤ 재 난상황 대응방법 & 담당역할, 소화 &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 ▶ 재난상황 적절하게 대처: 소화설비 작동방법 시연

재난 응급

상황

▲응급상황대응

현장

- •응급의료기기 모두 갖추고 적정관리>산소통, 산소마스크 (연결관(카테터)포함),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 ▶보관상태, 사용가능 여부, 정상작동 여부 등
- •침실, 화장실, 목욕실➤ 응급알림장치 각1개 이상 정상 작동

PH

•응급상황 대응방법 숙지 및 대처하는 방법 면담 ➤ 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등

ਂ 않아가보호



- •야간인력 배치기준 준수: 점검은 해당기관 직원 수행
- •야간근무지침 표준 마련 & 비치
-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야가근무지침 표준>참고)
- •매일 수급자 상태 확인 및 안전점검 일지 기록 확인

(EE)

• 야간점검>안전점검 내용 직원 숙지여부 면담 -수급자>수급자 상태(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배회 -시설>출입구&주방 잠금장치,창문개폐,소화기구,비상구,유도등 등 -기타 사항>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 키 등

지표별 평가내용

권리보장 및 노인권보호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기관 내부 게시 & 기관 이용안내서(기관 특성, 우수사례 등) 비치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비용, 시설규모, 설비, 화재·영업· 전문인 배상보험 증권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급여제공직원 현황, 월간 프로그램 표(인지기능 및 여가 프로그램명, 일정 월간, 주간 등의 등의 정보) • 기관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 신고

*시군구 신고: 주소, 전화 &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원 & 시설 현황, 급여종류, 정원,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 비급여 항목, 현원, 예약대기자 현황, 보험가입여부

권리 보장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보호자) & 지역주민이 직접 내방*참여하는 프로그램 반기별 1회 or 연 1회 이상 운영 > 생신잔치, 명절, 가족의 날, 어버이날, 연말연시 행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 ≫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상담 및 소통) 기를 현장

-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 분기별 1회 이상 상담
- •수급자 또는 보호자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반영
- •수급자(보호자) 상담실 운영(공생 제외) 상담실 표찰, 타인 방해 없이 상담 가능한 구분된 전용공간 운영

- •보호자 소통:반기별 1회 소통노력시설장 면담: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
- '보호자와의 분기별 상담'과 '보호자 소통노력'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기록 현장

- •침실당 칸막이 1개 이상, 커튼 구비, 개인수납공간
- •합숙용 침실 남실 및 여실 각각 구분하여 사용
- •욕구, 상태에 맞는 존엄성 배려한 급여제공
- •침실 입구에 수급자 이름 게시, 개인의복착용
- •개인정보 자료 적정 관리

면담 관찰

- •급여제공시 존칭사용&수급자 존중▶수급자 면담
-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내용 설명▶종사자 관찰
- ▶목욕, 배설, 체위변경, 이동도움등 급여제공과정 관찰

노인 인권 보호

▲노인인권보호

기록 현장

- •노인인권보호지침 모든 보호자(수급자) 제공 & 노인학대예방 관한 정보 게시 및 수록
- 모든 직원 &수급자>노인인권보호교육 & 노인학대예 방교육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후 기록 확인
 >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교육 이수 등
- •긴급, 어쩔 수 없는 경우 ➤ 신체제한 or 구속 시 ➤가족에게 통지 & 자세히 기록
- •운영위원회 반기1회 이상 수급자 or 보호자대표 참여 ≫노인학대예방 등 요구사항 청취하고 조치하기

理目

- 모든 직원&수급자➤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내용: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여
- -내용: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긴급. 어쩔 수 없어 일시적 수급자 신체제한 or 구속

- ➤신체제재 하는 경우 & 처리절차, 기록사항 숙지여부 ※구속사유: 절박성, 비대체성, 일시성
- ※기록사항: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사유), 제재일시, 제재자, 제재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기록



급여제공과정

※보거복자부고시 제2020-208회(2020.12.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신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시설급여 제공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교육코너/직무관련자료실 게시번호60029 시설급여제공매뉴얼 제1권 I.급여제공기준 i.ii.(2020.3.26.)



기본원칙

1.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내용 설명>개별적·종합적 욕구 반영한 급여제공계획
- ▲수급자 상태 등 고려 안전 급여제공>>수급자 중심 급여제공 & 프로그램 계획·운영
-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영했는지 평가하고 개선·노력하여 급여의 질 개선 노력

2.급여제공계획과 기준 근거한 급여제공

- ▲적절한 시설·장비 마련>> 운영규정, 근로계약 준수 · 급여제공기준 충분히 숙지
- ▲급여제공계획 따라 내용·시간 준수> 급여제공매뉴얼(비치) 정기적으로 교육*숙지
- ▲직원의 자격증 & 업무범위, 책임 명확화>자원봉사자 & 지역사회자원 적극 활용

3.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수급자인권 & 자기결정권 존중, 사생활 & 개인정보 비밀유지 등
- ▲잔존능력 유지·향상 위한 급여 > 역량강화 교육 등
- ☑매년 건강검진 & 근골격계 질환 등 관리➢ 직원 복지향상 노력
- ▲수급자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

급여제공 절차

1.이용 상담 및 계약

- ▲이용 전 상담 : 자격, 절차, 비용 등 상담 및 안내
- ▲계약 및 이용신청 결정, 권리 및 책임안내, 프로그램 등 관련사항 안내

2.통합사정

- ▲ 간호(조무)사, (계약)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 ▲참여 (개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병력, 생활환경 등 욕구 파악)

3.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 직원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참여

4.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매뉴얼에 따라 실시(기록작성 철저)

5.모니터링 및 재평가

▲ 초기사정 및 서비스 계획에 대한 평가

6.퇴소 및 적정서비스 연계

▲사망, 자진퇴소, 적정한 타 서비스 연계

※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 신체 및 인지상태, 욕구 등 변화에 따라 변경 계획 후 제공 가능

지표별 평가내용

통합

사정

▲통합적 사정

- 기투
- •타당한 평가도구로 해당 기관 직원이 실시
- •욕구사정, 낙상&욕창위험도, 인지기능 평가실시
-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욕창&낙상위험도: 논문 등 검증된 평가도구 (예시)Braden scale 욕창위험도, Huhn의 낙상위험도
- •인지기능평가:병원,보건소,치매지원센터 등 인정 (예시)CIST, K-MMSE, MMSE-K 등

- 욕구사정 8가지 항목 및 총평
-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 인지상태 : 정신상태, 감정 등
-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 영양상태 : 체중,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욕구
- 자원이용 욕구 : 의료기관, 종교 활동 등
- 총평 :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함

급여 제공 계획

▲급여계획 수립 및 제공

- 기록 전산
- •급여제공계획은 해당 기관 직원이 작성한 경우 인정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욕창위험, 인지기능평가 등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확인·서명
-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기존수급자≫ 연 1회 이상 실시

- •확인사항: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
- •급여제공계획 변경 필요시 사유기록≫계획변경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
- •급여제공계획 수립 배경 및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보고하고
- •급여제공계획 따라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에게 교육 실시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정급여제공!

청결 서비

亼

▲수급자청결서비스

기록 현장

- •주1회 이상 목욕급여 제공 ➤ 전·후 상태 관찰·기록
- •청결서비스 제공 도구 및 시설환경 위생상태
- >현장 확인: 손톱깎이, 세면도구, 양치도구, 목욕용품, 목욕실 위생상태 등

면담 관찰

- •수급자 면담: 상태 등 고려한 청결서비스 제공여부
- •수급자 관찰: 세면, 구강관리, 목욕, 몸단장(의복)
- 구강상태: 혀, 치아, 잇몸, 틀니상태 등
- 신체상태: 손·발톱 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등

Ϫ식사제공



식사 제공

- •영양사 작성한 1식3차이상 식단표 게시&보온상태 제공
- •씹는기능 및 소화기능 등 고려 ➤적절한 식사제공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
- •수급자 침대 외 장소에서 식사하는지 현장 확인
- •수급자 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 지원 현장 확인

관찰

- •수급자 잔존능력 고려하여 스스로 식사하도록 지원
- ▶ 수급자 기능 상태 따른 식사도구 활용, 식탁 높이 조절, 식사보조도움 정도, 식사시간 배려 등

ਂ 배설관리



배설 관리

- •배설관리 필요한 수급자 파악>적절한 조치
- •신규수급자: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연속 72시간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매시간 섭취량, 대·소변량, 기저귀 및 옷교환 여부 기록
-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 후 급여제공계획 변경필요 >작성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반영
- •모든 수급자: 매일 배설상태 기록
- •배설 관리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
- -지체없이 기저귀 교환
- -침실당 1개이상 이동형 좌변기,휴대용 배변기구비
- •의사처방 따라 유치도뇨관 관리(소변주머니 위치확인, 비우기 등)
-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라-2-1)-(2) 유치도뇨관 관리 참고

지표별 평가내용

▲욕창예방/ 간호관리



•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Braden scale 18점 이하 자) >위험도 분기별 1회 이상 파악

욕창

예방 &

관리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Braden scale 12점 이하 자) >분기별 1회 이상 파악 & 발생여부 1일1회 이상 관찰
- •체위변경에 도움 필요한 자>수면시간 포함 2시간 마다 체위변경 실시 기록&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 •체위변경 시간 기록≫횟수만 기록시 인정하지 않음

(田田)

- •욕창발생 예방 방법을 숙지하는지 직원과 면담
- 체위변경,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욕창예방매트리스, 쿠션, 방석 등)
- 수면시간 포함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
- ※ 체위변경에 도움 필요한 자 ➤ 위험도 평가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 편마비가 있는 수급자, 인지기능 저하로 체위변경 안하는 수급자 등

▲욕창관리

- 기록 현장
- •욕창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및 욕창변화 주 1회 이상 관리 & 기록
- ▶수급자명, 일자, 부위, 크기, 조치내용
- •욕창발생 수급자 최소 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 실시

☑ 간호 및 의료서비스



- •계약의사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 방문 >모든 수급자 월2회 이상 진찰 & 기록
-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치
- •계약의사 계약해지 등 공백 기간 1달(증명 자료)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참조

의료 관리

▼투약 및 약품관리



- •약품보관 잠금장치➢ 냉장고 또는 약품보관함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함
- •의약품 유효기한, 보관상태 등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수급자별 실제 투약 시간에 대해 기록 & 관리
- 면담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
- 투약 시 확인사항: 약물투약의 6원칙(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

✓기능회복훈련

- •수급자 신체자립능력 유지 위한 기능회복훈련 실시 ▶신체기능 & 기본동작 & 일상생활동작훈련 제공
- •2020년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제1권:Ⅱ.급여제공과정 다-2-1) 기능회복훈련(영역별 예시) 참조

- 면담 (관찰) •신체기능훈련, 기능동작훈련, 일상생
- 활동작훈련 등 각 영역별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숙지 하고 제공하는지 직원과 면담
- •모든 수급자 계획수립 ➤ 각 영역별 제공 관찰
- •수급자 건강상태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사유확인

재활

볼리치료

- 刀马
- •물리(작업)치료 평가 모든 수급자에게 연1회 이상 > 관절운동범위, 기본동작, ADL 등 물리(작업)치료 대한 평가
-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물리(작업)치료 계획 연 1회 이상 수립->실시 >신규수급자: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물리(작업)치료사가 수행해야 함
- •물리(작업) 치료사 의무배치 기관만 확인

프로

그램

✓인지기능증진서비스

-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설)모든 수급자 인지기능평가 결과>그룹별 계획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그룹별 최소 주 1회)
- •참여 불가능한 수급자 근거 기록

- •수급자(보호자) 의견수렴 ➤ 분기별 1회 이상 >그 내용 프로그램 반영 > 연 1회 이상
- •종교 활동, 이·미용봉사 등 프로그램(X)
- •정서적 안정감, 시각·촉각 자극 주는 환경 현장 확인 ▶과거기억 촉진하는 사진, 소품 등



기록 현장

- •모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설)그룹별 주1회 이상 실시: 상태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프로그램 제공 모두 가능
- >(공생)모든 수급자 주1회 이상 실시
- •수급자(보호자) 의견수렴 ➤ 분기별 1회 이상 ▶그 내용 프로그램 반영 ▶ 연 1회 이상
- •종교 활동, 이·미용봉사 등 프로그램(X)

지표별 평가내용

급여제공 결과(수급자 상태)

≼ 등급현황

전산

- •퇴소 당월 등급판정 받은 수급자 포함
- •등급판정 직전 연속 6개월 이상 급여 제공받고
- ▶지표 적용기간 중 갱신 & 등급변경신청 등급 판정 결과 등급 유지·호전율(공단 전산)
- •퇴소 후 재입소하여 6개월 미경과자 산정제외
-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은 미포함
- ≫청구내역이 있는 월은 급여제공 월수 포함

▲욕창현황



- >발생률 산정제외
- •기관 내 입소 후 욕창 발생률 및 치유율
- •입원 중 욕창 발생한 수급자

- >치유된 경우>치유율에 산정
- •욕창 있는 수급자 기록 고의 누락 시 '미흡'

제공

결과 ▲유치도뇨관 현황



- >삽입률 산정제외
- •기관 내 입소 후 유치도뇨관 삽입률 및 제거율
- •응급상황 및 치료 목적 유치도뇨관 삽입한 경우
- >제거된 경우>제거율에 산정 •유치도뇨관 있는 수급자 기록 고의 누락 '미흡'

☑배설기능 현황



- •입소 후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 ➤대변&소변기능 유지 호전현황
- ➣공단전산 & 기관자료 확인

- •최종 등급판정 결과(대·소변 조절하기) 비교 확인
- •등급판정결과 외 기관 관련 자료 확인

결과평가 및 사례관리

▲ 급여제공 결과평가



-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한 결과 정기적 평가 (반기별 or 연 1회 이상)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하여야함

결과 평가

▲ 사례관리(연계기록지 제공)



- •30인 이상(월 1회),10인 이상 30인 미만(분기별 1회)
- •공생(반기별 1회)
-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결과, 참석자명
- ▶직종별 급여제공직원 각 1명이상 참석
- •사례회의결과 30일 이내 급여반영

- ➤제공계획 변경 or 급여제공 내용 확인 등
- •전원·퇴소시 수급자 이용 종료상담 & 연계기록지

•평가결과 반영≫개별 급여계획 30일 이내 재작성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희망급여(제공대장 작성)

만족도 및 노력도

만족

두

▲유선만족도

(유선)

▲질향상 노력 기를 현장

- •대상 : 수급자(보호자)
- •내용 :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4개 항목
- •방법 : 유선확인,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 •서비스만족도 향상 위한 노력 실시 여부
- •직원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 사례
- •적정한 경영실태 참여 및 관련자료 제출
- •청구상담봉사자 위촉 & 활동 실적

- 24 -

-	25	-	

제3장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기 주기별 업무 수행
- 2
 대분류
- ③ 기관운영
- 4 급여제공과정





주기별 업무 수행

※방문요양(요), 방문목욕(목), 방문간호(간)

연 1회 이상

기관

-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정비
- ▶ 전년도 재무회계 결산자료 제출(지자체)
- ▶ 기관정보 게시(지자체+공단 홈페이지)
- ➤ 변경사항 지체 없이 수정 신고
- ▶ 퇴직금여제도 운영 & 지급
- ▶ (요,목)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리
- ☑ (간) •기구 소독관리 및 의료폐기물 분리
 - •비품 구비 및 대장 작성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확인

종사자

- ▶ 신규 직원 근무 시작 일까지
- ➤ 근로계약 체결 & 건강검진 결과 확인
-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 등
- ➤ 급여제공 전 신규 및 인계인수 교육
- ▶ 역량강화(연1회)
-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고충처리 절차 등
- ➤ 담당업무범위, 부당한 요구 대처법 교육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 후
- ➤ 급여제공 기록 & RFID 전송

반기별 1회 이상

▶수급자 사례관리회의 및 반영

○ 분기별 1회 이상

▶직원 복지(포상 등) 제공(**요양,목욕**)

● 매월 1회 이상

- ➡급여계약통보서 전월 말일 통보
- ➡급여종류별 직원회의(50% 이상 참여)
-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보호자) 제공(RFID)
- ▶보수 및 명세서 지급

○ 매주 1회 이상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수기 기록지 제공
- ▶수급자상태변화 기록

수급자

- □ 급여계약 체결 및 급여계약통보서 전월 말일 통보
- ▶ 수급자 계약 시 표준장기이용계약서 변경 사유 기록
- ▶ 서비스계획 변경 시 사유 기록(필요시 계획서 재작성)
- □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 설명하고 동의
- □ 계약시 부본 제공 및 급여제공 방법 안내
- ➤ 업무범위, 직원대우 등
- ▶ 모든 수급자(보호자) 7가지 예방 및 노인학대예방 설명
- ➤ 신규 14일 이내
- □ 급여제공 시간 및 직원 변경 시 사전 안내
- ▶ 수급자(보호자)별 상담 결과 연1회 이상 반영
 - 🏂 통합사정(욕구평가 &위험도평가) 정기적 파악
 - ⇒ 기존수급자 365+30일 이내
 - ⇒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 *위험도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
 - 🎤 급여제공계획(공단 제출)수립 & 정기적 파악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욕구*위험도 평가 반영
 - 🎤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 설명하고 동의
 - 🏂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7가지 예방 및 노인학대예
 - 방 설명(신규 14일 이내)
 -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
 - 매월 수급자 방문상담관리
 - 수급자 기능회복훈련 실시(요)
 - 🏂 급여제공 결과평가(추가)



② 평가지표 대분류

평가방법	기를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전신 공단 전	!산자료 확인 <mark>연장</mark>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6/164	관찰 면당 시연 직원 및 수급자 대상 관찰*면담*시연 유선 보호자 유선 만족도 확인				
평가대상	기관	운영	수급자	세사종	
평가방법	기록, 전	산, 현장	면담, 관찰	면담, 관찰, 시연	
대분류 ⊤	기관 및 종사자	수급자			
V			~	<u> </u>	
기관 운영	· 운영규정 및 지침 · 직원회의 · 경력직 · 건강검진 · 직원복지향상(요,목) · 5대보험및퇴직(간) · 직무교육(요,목) · 개인정보보호			· 보수 · 업무범위교육	
환경 안전	· 목욕장비(목욕) · 기구소독관리(간호) · 비품구비(간호)	•위험도평가	·생활환경(요) ·위생적 급여제공(목)	• 복장위생	
수급자 권리 보장	· RFID 시스템 관리 · 수급자알권리보장	• 방문상담관리	· 급여제공안내 · 시간준수	• 급여제공역량관리	
급여 제공 과정		· 계약체결 및 통보 · 수급자욕구평가 · 급여제공계획 · 급여제공적절성 · 목욕전후 상태관찰(목) · 방문간호지시서(간) · 사례관리회의	 욕구반영 직원변경 자료제공 기능회복훈련(요) 적정목욕급여제공(목) 간호관리(간) 		
급여 제공 결과		· 등급현황(요양)	・노인인권보호 ・신체청결상태(요) ・서비스만족도 조사(유선)		
별도 가점	·청구상담봉사자 상담 실적 ·요양보호사 월급제 운영 등(방문요양) ·경영실태조사 패널활동 ·재무회계자료 제출				



3 기관운영

※방문요양(요), 방문목욕(목), 방문간호(간) 급여종별, 지표번호

구분	지표별	평가내용	요목간
기관 관리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 11개,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내용 충실 & 열람 가능 •운영규정 따라 기관 운영해야함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지표	1-①②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비밀누설금지)	9 9 8 기관 현장
	운영규정(사	업계획)에 따라	
채용	▲보수(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여부 및 계약서 필수사항 >필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알고 있는지 면담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여부 면담 •보수(임금)명세서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 하는지 확인	5-①②③ 종사자 면달
건강 검진	✓건강검진(결핵 포함)•신규직원: 급여 개시일까지, 5개 영역, 건강검진 결과 제출>입사 전 1년 이내 검진자료	•대표자겸 직원 or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 건강검진 매년 정기적 실시 후 제출 ▷5개 영역: 계측, 요, 혈액, 영상, 판정	4-①② 기관 기급
	▲직원회의 •매월 정기적으로 직원회의 실시 >급여종별 참석대상 50% 이상 참석	•필수: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명 •직원회의 결과 연1회 이상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에 반영	2 기관 기그
인력 운영	▲경력직 관리 •안정적 *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 & 전문성을 갖춘 인력 비율	•연속하여 2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	3 기관 전산
	▲ 직원복지향상 •5대 보험 가입 & 퇴직급여제도 운영 > 퇴직급여 지급여부 및 중간정산: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한 경우 인정	•복지(포상 등) 분기별 1회 이상 제공 •직전 정기평가결과 받은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 여부(방문간호 제외)	6 기관 기급
	▲ 직무교육 •기관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의 질 향상 노력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수 대비 교육 이수자 수 비율	7 -
직원 교육	▲업무범위 교육 •급여종류별 업무범위교육을 받고 내용을 인지하는지 면담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을 받고 인지하는지 면담	8 7 종시자 면담

구분	지표당	평가내용	요 목 간
	▲ 급여제공 역량관리 •운영규정 11개,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연 1회 이상 교육 및 내용 숙지 면담 •급여제공 전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받음 •고충처리 절차 숙지 & 적절한 조치여부	신규교육:수급자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인수인계:수급자 건강상태, 가정*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15 16 15 종시자 면담
	▲ 수급자 생활환경 청결상태 • 수급자 방(침구류, 먼지 등), 화장실,	주방(음식 등) 청결상태 현장 확인 평가	10
위생 관리	▲방문목욕 급여제공 •목욕장비 및 목욕용품 청결여부 면담	위생적으로 목욕 제공 여부 면담	10 수급자 면담
	▲위생적인 복장상태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 착용 여부 •급여제공자(기관명 또는 직원명) 명찰 >탈 부착식 명찰 제외	•유니폼(앞치마, 현재 입고 있는 옷 등) ➢복장상태 위생적인 확인	11 9 종사자 관찰
설비	▲ 목욕장비 •목욕차량 필수설비: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욕조(이동용) 소독일지: 일자, 시간, 수급 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	12 기관 기관
관리	▲방문간호 비품 구비 및 소독 관리•급여제공 필요비품:>검사*위생*처치용품, 측정도구, 멸균용품•의료폐기물 분리 확인	•비품관리대장: 비품명, 일자(구입·사용), 수량, 유효기간, 점검자명 •소독&기록: 일자, 기구, 방법, 점검자명	기관
	권리보장 및 노인	U권보호지침에 따라	
권리	▲ 방문상담관리 •수급자 또는 보호자 매월 방문 상담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 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수급자별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급여 제공계획에 반영	14 15 14
보장 * 인권 보호	▲수급자 알 권리 및 급여선택권 보장 •5가지 기관내부 게시: 최종 평가 결과, 인력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비상연락 체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사본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게시	•기관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지자체 신고 • 지자체 신고로 변경 항목:주소/전화번호/ 인력 및 시설 (변경)현황 / 급여구분 • 기관에서 변경할 수 있는 항목:공자사항/사진/ 교통편/주차사설/이용계약된한 사항/현원/보험기입	18 19 18 기관 연장 전산
	▲ 노인인권보호 •직원에게 안전하게 급여제공 받고 있는지 >급여제공과정에서 상처, 골절, 낙상 등이 없었는지 면담	•신체부위에 상처를 입힌 적 있는지 관찰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 받은 사실이 있는지 면담	28 30 29 수급자 면담 관찰



급여제공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2020.12.2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교육코너/직무관련자료실 게시번호 60009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제공 매뉴얼 1권 I.급여제공기준 가. / 나.(2019.6.)



기본원칙

- 1.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 ▲수급자(보호자) 급여내용 설명(상담)>개별적·종합적 욕구 반영한 급여제공
- ▲수급자 상태 등 고려 안전한 급여 제공>상태변화 기록 작성>서명 및 확인
- 2. 급여제공계획과 기준 근거한 급여제공
- ★운영규정, 근로계약, 급여제공기준 준수>급여제공계획 따라 내용·시간 준수
- ▲적정 급여제공 ➤ 급여제공 내용 충실하게 기록 ➤ 부당한 요구 대응 및 조치
- 3.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매년 건강검진 ➤ 역량강화 교육, 직원 복지향상 노력
- ▲직원 변경 시 인수·인계 관리 > 노인 학대·부당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

(방문간호)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명시된 방문간호급여 제공

-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이상 증상 발견 ➤ 보고, 적절한 관리➤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월 1회 지도 감독 ➤ 필요시 전문 의료기관 의뢰



급여제공 절차

1.이용 상담 및 계약

- ▲이용 상담 : 자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내용, 비용 등 상담
- ▲계약기간 및 이용신청 결정, 권리 및 책임안내 등 관련사항 안내
- 2.통합사정
- ▲수급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병력, 생활환경 등 파악
-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파악 등
- 3.급여제공계획 수립
- ▲ 수급자 보호자와 합의한 목표 수립,
- ▲수급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급여제공계획 수립
- 4.급여 제공
- ▲수립된 계획에 따라 급여 제공 실시하고 급여제공에 대한 기록
- 5.모니터링 및 재평가

 ▲초기 통합사정 및 급여계획·제공에 대한 평가, 문제 발생 시 계획 재수립
- 6.이용 종료 및 적정서비스 연계
- ▲사망, 자진 이용종료,
- ▲적정 서비스 연계 ➡ 사후관리
- ※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 신체 및 인지상태, 욕구 등 변화에 따라 변경 계획 후 제공 가능

구분	지표별	평가내용	요목간
급여 계약	▲계약체결 및 급여내용 통보•급여계약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 종류 & 급여비용 반영 확인>불일치하는 경우 충분한 사유 작성	중분한 사유: 수급자(보호자) 상태·요구,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종합의견 등●급여계약통보서 전월 말일까지 공단통보	19 기관 기급
	▲급여제공내용 안내(수급자 알 권리)•급여제공 관련하여 설명 여부 확인>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서비스 현장에 있는지 확인	•시설장 등 방문하여 급여종별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호칭 및 대우에 관한 안내 하였는지 확인	13 14 13 수급자 연장 면담
통합	▲위험도 평가 정기적 파악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 •기존수급자: 연1회(365+30일 이내) 실시 •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낙상·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 파악 >검증된 도구 이용(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 이용 및 저작권 유의)	12 13 12 기관 기급
동압 사정	▲ 욕구평가 정기적으로 파악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 •기존수급자: 연1회(365+30일 이내) 실시 > 필수: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 총평 >해당 급여직원 작성	•8개 항목 및 판단근거(신체, 질병, 인지, 의사 소통, 영양, 가족·환경, 주관적욕구, 자원이용) ➤단순체크리스트는 판단근거 확인	20 21 20 기관 기관
	개별 급여기	제공계획 수립	
급여제공	▲급여제공계획 수립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수립 •기존수급자: 연1회(365+30일 이내) 수립 •급여제공계획>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낙상·욕창평가, 인지기능검사 반영	 필수사항: 급여종류, 목표, 세부목표, 필요 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 해당 급여직원 작성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하고 동의, 확인 서명 받음 	21 22 21
계획	▲ 방문간호지시서 • 방문간호지시서 따라 급여 제공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확인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방문 간호 급여제공기준)	24 기관 기급
자료 제공	▲수급자(보호자) 자료제공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7가지 예방자료 제공 받았는지 현장 확인 ➤ 욕창·낙상· 탈수·관절구축·치매학대예방·배변도움	•예방자료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 면담으로 확인	25 28 26 수급자 연장 면담

지표별 평가내용







- •급여제공계획 수립 배경 & 유의사항 및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보고하고
- •급여제공계획 따라 적정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에게 교육 실시 !



적정 급여 제공	▲급여제공 적절성 •급여제공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사유기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보호자)	22 23 22
	 급약제공계획 관중 필요한 중부 전류건국 >급여제공계획 재수립하고 따라서 제공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 기록 >급여제공자 서명 	에게 제공(제공대장, 서명부 등) >→(수기기록지) 주 1회 이상 제공 (RFID) 월 1회 이상 제공	기관 기급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이용하여 전송에 참여하는 요양요원 수	•지표적용기간 중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RFID) 전송 건을 사용한 청구활용률	16 17 16 기관 전산
	▲시간준수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급여제공직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면담	•시간 변경 시 사전 공지하는지 면담	17 18 17 수급자 면답
	▲욕구 반영한 급여제공 •개별욕구 반영한 실제 급여제공 반영 면담	•급여 제공시 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	23 24 23 수급자 면달
	▲ 직원 변경 시 사전안내 •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에는 시설장(등)이 동행하여 직접 대면하여 새로운 직원소개	•직원 변경➤급여제공수준 동일하게 유지 되거나 & 급여제공 수준이 향상되어야함	24 25 수급자 면담
	▲생활환경 청결상태 •수급자 방(침구, 방 먼지·정리정돈 상태 등)	•화장실, 주방 청결, 냉장고 및 싱크대, 행주 및 정수기 청소상태, 음식물 상태 등	10
방문 요양	▲기능회복훈련 •기본동작훈련 제공받는지 면담 ➤보행, 자세변환, 걷기, 밀기, 올바른 신체정렬 등	•일상생활동작 훈련 제공받는지 면담 ➣양치, 옷 교환, 몸단장, 머리 빗기 등	26
	▲신체청결상태 •구강청결상태: 혀, 치아, 잇몸, 틀니 등	•신체청결상태: 피부 두발 청결, 각질, 손·발톱, 신체청결상태 관찰	29 수급자 관찰
	▲등급현황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제공 후	>> 수급자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 호전되는 비율	30 기관 전산

구분	지표별 평가내용		요목간
방문 목욕	▲목욕 전·후 상태관찰 •목욕 전·후 수급자 상태관찰 기록 확인	•얼굴·입술·손톱색깔, 특이사항, 목욕 전 배변·배뇨 도움 등	26 기관 기급
	▲ 적정목욕 급여제공 •목욕물 온도 및 목욕시간 적정한지 •이동보조, 몸 씻기: 2명 이상 요양보호사	•목욕 전 배뇨, 배변 도움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을 정리	27 수급자 면달
방문 간호	▲ 적절한 간호관리 •수급자상태 따른 적절한 간호처치 제공	•적절한 간호관리: 위관, 도뇨관, 장(요)루, 욕창 처치 후 관리 상태(청결상태, 위치 등)	27 수급자 면담 관찰
결과평가 및 사례관리			
	▲ 사례관리회의		27 29 28

결과 평가

▲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한 결과 정기적 평가 (반기별 or 연 1회 이상) ➤ 일자, 총평 또는 종합 소견, 작성자(해당 기관 직원이 작성)

•반기별 1회 이상 사례관리 회의 실시≫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평가결과 반영≫개별 급여계획 30일 이내 재작성

(p.31 참조) 급여제공 후 '모니터링 및 재평가'단계임

만족도 평가

만족 도

▲서비스 만족도조사(유선)

•대상: 수급자(보호자)

•내용: 서비스 대한 만족도 평가 5개 항목

•방법 : 유선확인, 공단의 별도 계획에

• 1개월 이내 회의내용을 급여에 반영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제공내용 확인

따라 실시

31

기관 **기**교

수급자 **유선**

30

제4장 주야간(단기)보호

- 기 주기별 업무 수행
- 2 대분류
- ③ 기관운영
- 4 급여제공 절차





주기별 업무 수행

연 1회 이상 or 연중

※주야간보호(주), 단기보호(단)

기관

-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마련 및 정비
- 전년도 사업계획 평가 & 재무회계 결산자료 제출(지자체)
- ▶ 기관정보 게시(지자체+공단 홈페이지)
- ⇒ 변경사항 지체없이 수정 신고
- ▶ 퇴직금여제도 운영 & 지급
- ▶ 이동서비스 차량보험 가입 & 관리(주)
- ➡ 응급상황 매뉴얼, 비상연락망 & 응급상황 발생대장 관리 종사자
- ▶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 준수
- ▶ 신규 직원 근무 시작 일까지
- ⇒ 근로계약 체결 & 건강검진 결과 확인
-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 등
- ⇒ 급여제공 전 신규 및 인계인수 교육
- ▶ 역량강화(연1회) 교육: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고충처리 절차 등(담당업무, 부당한 요구 대처 교육)

반기별 1회 이상

- ▶ 수급자 사례관리회의 및 반영
- ▶ 보호자회의 실시(주야간)
-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
- ▶ 소화 및 경보설비 직원교육
- □ 직원 & 수급자 재난상황 대응훈련

분기별 1회 이상

- ▶ 전문소독제 사용 실·내외 소독
- ▶ 일반 의약품 유효기간 등 점검일지 작성
- ▶ 사회적응프로그램 분기별 1회 이상 실시(주)
- ▶ 사례회의 실시 후 1달 이내 반영
- ▶ 직원 복지(포상 등) 제공

매월 1회 이상

- ▶ 소화 및 경보설비 점검 주방 및 집기소독 실시
- ☑ 소식지, 프로그램계획표, 식단표 온라인or오프라인 제공(주) ☑ 주방 및 집기소독
- ▶ 자원봉사자의 정기적 활동
- ▶ 보수 및 명세서 지급

수급자

- □ 급여계약 체결 및 급여계약통보서 전월 말일 통보
- 이동서비스 수칙 수급자(보호자) 제공(주야간)
 - ▶ 수급자 계약 시 표준장기이용계약서 변경 사유 기록
 - ▶ 수급자(보호자)별 상담 결과 연1회 이상 반영
 - ➡ 프로그램에 대한 수렴의견을 연 1회 이상 반영
 - ➤ 서비스계획 변경 시 사유 기록(필요시 계획서 재작성)
 - 🎤 통합사정(욕구평가 &위험도평가) 정기적 파악
 - ⇒ 기존수급자 365+30일 이내
 - ⇒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 *위험도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
 - 🎤 급여제공계획(공단 제출)수립 & 정기적 파악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욕구*위험도 평가 반영
 - ⇒ 프로그램 계획수립
 - 🎤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 설명하고 동의
 - 🎤 급여제공계획 및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급여제공
 - ⇒ (주) 신체·인지기능 프로그램 각각 주 3회 이상
 - ⇒ (단) 신체·인지기능 프로그램 **포함 주 3회 이상**
 - 🎤 주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기록 및 제공자 서명
 - 🎤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작성
 -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보호자) 제공
 - 🎤 급여제공 결과평가(추가)
 - 🎤 전원 또는 퇴소시 연계기록지 제공

● 매주 1회 이상

- 자원봉사 활동(단기보호 : 2주 1회)



2) 평가지표 대분류

평 가망면	경기를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전산 공단 전산자료 확인 연장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관찰 면담 시원 직원 및 수급자 대상 관찰*면담*시연 유선 보호자 유선 만족도 확인			
평가대상	기곤	!운영	수급자	지사종
평가방법	기록, 전	!산, 현장	면담, 관찰	면담, 관찰, 시연
대분류 J	기관 및 종사자관리	수급자관리		7
기관 운영	· 운영규정 및 지침 · 운영계획 · 자원봉사자 · 인력기준 · 인력추가배치 · 경력직 · 건강검진 · 직원복지향상 · 개인정보보호			·보수
환경 안전	·식당 및 조리실 ·감염관리활동 ·시설기준,실내환경 ·낙상예방환경조성 ·응급체계,소방시설 ·재난상황대응훈련	·위험도평가		· 복장위생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수급자 권리 보장	·수급자 알권리 보장	·존엄성 배려(단기) ·수급자 상담관리 ·가족과의 소통(주야간)		· 수급자존중서비스 · 급여제공역량관리
급여 제공 과정	·식단표 및 ·음식상태 ·약품관리 ·의료기관 연계	·계약체결 및 통보 ·수급자욕구평가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적절성 ·수급자안전관리(주야간) ·이동서비스수칙(주야간) ·프로그램(주야간) ·기능향상프로그램(단기) ·연계기록지 제공 ·사례관리회의	・욕구반영 ・구강관리도움(주야간) ・이동서비스(주야간) ・간호관리(단기)	·급식 및 투약관리
급여 제공 결과		・등급현황(주야간)	・노인인권보호 ・신체청결상태(단기) ・서비스만족도조사 (유선)	
별도 가점	·청구상담봉사자 ·경영실태조사 패널활동 ·재무회계자료 제출			

※ 욕구평가, 위험도평가 및 급여계획 수립 주기는 수급자별 365일+3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함



3 기관 운영

※주야간보호(주), 단기보호(단) 급여종별, 지표번호

구분	지표별	평가내용	주 단
기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운영규정 11개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내용 충실 & 열람 가능•운영규정 따라 기관 운영하여야함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지표	1 기관 기 나
운영	▲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하고 계획 따라 사업 실시 •사업결과 평가 후 차기년도 계획 반영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제출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지표	2 기관 기급
관리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비밀누설금지)	10 기관 연장
-	인력배치기준 및 운영	경 규정(사업계획)에 따라	
인력	▲ 인력기준 준수 • 법적 인력배치기준 준수 확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시설기준 등)	➤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인력기준	4 기관 전산 현장
	▲ 인력추가배치 •지표적용 기간 내 4대 직종 추가배치 운영 &가산 점수 합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5조 (인력추가배치가산)	5 기관 전산
운영	▲ <mark>경력직 관리</mark> •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 & 전문성을 갖춘 인력 비율	•연속하여 2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	6 기관 전산
	▲건강검진(결핵 포함)•신규 직원: 급여 개시 일까지, 5개 영역, 건강검진 결과 제출➤ 입사 전 1년 이내 검진자료	•대표자겸 직원 or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 건강검진 매년 정기적 실시 후 제출 ➤ 5개 영역: 계측, 요, 혈액, 영상, 판정	7 기관 기급
직원 복지	▲보수(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여부 및 계약서 필수사항 ➤ 필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알고 있는지 면담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여부 면담 •보수(임금)명세서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 하는지 확인	8 종사자 면달
	▲직원복지향상 •5대 보험 가입 & 퇴직급여제도 운영 ➤ 퇴직급여 지급여부 및 중간정산: 관련법 령에 따라 지급한 경우 인정	•복지(포상 등) 분기별 1회 이상 제공 •직전 정기평가결과 받은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 여부	9 기관 기급

구분	지표별	평가내용	주	탈
직원 교육	▲급여제공 역량관리 •운영규정 11개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연 1회 이상 교육 및 내용숙지 면담 •급여제공 전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받음 •고충처리 절차 숙지 & 적절한 조치여부	>신규교육: 수급자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인수인계: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 환경, 특이사항 등	24 종사 면	25 나자 달
자원 활용	▲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 주 1회 이상/2주 1회 이상/월 1회 이상 •개인 또는 단체 정기적 방문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전산 또는 활동일지 기록 •사회봉사명령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u>기</u>	3 관 목
	시설기군 뜻 중앙1	7정(사업계획) 에 따 라		
시설	▲시설기준 •법적 시설기준 준수, 지자체에 신고한 평면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복지 시설의 시설기준 등)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시설 및 설비기준	7	4 관 장
게글	▲실내환경 •기관 내부 채광 가능한 창문 •환기 장치 작동 & 온·습도 적정 여부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사. (1)생활실, (2)침실	기 연	5 관 장
	▲ 낙상예방 환경조성 •외부출입구 & 계단(자동열림장치)	•안전손잡이 설치: 복도, 목욕실, 세면대, 프로그램실, 변기, 싱크대 등	1	6
안전 환경	•주방 잠금장치 •위험요인제거(부탄가스, 세제, 칼, 가위 등) •전기콘센트:미사용시 플러그형 마개	•미끄럼방지 처리: 목욕실, 화장실 등 •문턱 제거: 생활실, 프로그램실, 화장실, 식당, 목욕실	기	관 장
	▲ 위생적인 복장상태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 착용 여부	•유니폼(앞치마, 현재 입고 있는 옷 등)	1	1
	•급여제공자(기관명 또는 직원명) 명찰 >탈 부착식 명찰 제외	>복장상태 위생적인 확인	종 ^人 관	
위생	▲수급자존중 서비스(위생적 급여제공) •직원 서비스 전·후 손 씻기 수행여부	≫ 소 씨기 ㄸㄴ 소 스도하기 아고 이하요	2	2
관리	식사(간식)보조, 배식, 쓰레기 및 의료폐 기물 다룬 후 등 급여제공과정 관찰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지 않고 일회용 장갑만 교체 시 불인정		사자 잘
	▲식당 및 조리실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2
	•식품 & 식재료 유효기한 준수 확인 •식당, 조리실, 식품보관실, 냉장(동)고 청결 •주방&주방집기류 주 1회 소독실시, 기록	및 직원배치기준 사.(7)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 근무 직원 위생모, 복장 확인 등	기 현 기	
감염	▲ 감염관리활동	. 보기병 1회 이사 시내.이 스투오 시민란	1	3
관리	주출입구 손세정제 비치간호비품 소독관리 및 청결상태의료폐기물 분리 배출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소독을 실시함 ➤자체소독: 일자, 소독제품명, 소독장소, 소독자명 ➤전문업체소독: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기 연 관	장

구분	지표별	평가내용	주 단
재난	▲응급체계 •생활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 장치 각각 1개 이상 설치>정상 작동	•응급상황 매뉴얼(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포함 응급조치 & 대처법) 및 비상연락망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여부	18 기관 현장
	▲소방시설 •소화 & 경보설비 갖추고 매월 점검기록 >사용방법 반기별 1회 이상 직원교육 >필수: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비상구 & 유도등 항상 켜져 있어야 함 ➤'형광유도표지' 안됨 >피난안내도 & 대피 경로 부착	19 기관 기록 현장
*	▲ 재난상황 대응훈련(직원 & 수급자 포함)• 화재 등 재난상황 매뉴얼> 대응방법 및 비상 연락체계	•반기별(or 연) 1회 재난 대피훈련 실시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20 기관 기록
상황	▲재난 및 응급상황대응●응급상황 대응방법 면담>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등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작동방법 시연	•재난상황(화재, 지진 등) 대응방법 &담당 역할, 소화설비, 경보설비 위치 면담	21 종사자 면담 시연
	▲ 의료기관 연계 •응급상황 등 의료적인 조치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 가능 여부	•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협약서 or 계약서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기록함	38 기관 기급
	권리보장 및 노인	권보호지침에 따라	
	▲수급자 존중 서비스•수급자 존엄성 배려하여 급여제공>급여제공 과정 시 존칭 사용 & 존중	>급여제공 전 서비스내용 설명 >급여제공 행위 시 종사자 관찰	22 종사자 관찰
	▲ 존엄성 배려한 급여제공 •남녀 침실 구분 •침실 입구 수급자 성명 게시	•침실 개인 수납공간 적정 사용 •침실마다 칸막이 1개 이상 or 커튼설치	- 23 - 기관 연장
권리 보장 * 노인 인권 보호	▲ 수급자 상담관리•모든 수급자(보호자) 분기별 1회 이상 상담•필수사항: 상담일자,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내용)을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상담내용: 수급자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	23 24
	▲ 가족과의 소통• 보호자 회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필수:일자, 시간, 장소, 회의내용, 결과, 서명	•기관소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월간 프로 그램 계획표 & 식단표 ➤ 월 1회 이상 제공	25 - 기관 기급 -
	 ▲수급자 알 권리 및 급여선택권 보장 •8가지 기관정보 내부 게시 >최종 평가 결과, 인력현황표,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표, 근무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비상연락체계, 화재/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인력·시설현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변경 시 지체없이 지자체 수정 신고 ➤ 홈페이지 수정 게시 •지자체 신고로 변경 항목:주소/전화번호/인력 및 시설 (변경)현황/급여구분 •기관에서 변경 항목:공지시항/시진/교통편/주차시설/ 이용계약 관한 시항/ 현원/ 보험기입	26 기관 연장 전설



급여제공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2020.12.2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중사자마당/기관중사자교육코너/직무관련자료실 게시번호 60009_주야간보호 급여제공 매뉴얼 I .급여제공기준 가. / 나. (2019.6.)

기본원칙

1.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내용 설명>개별적·종합적 욕구 반영한 급여제공계획
- <mark>☑</mark>수급자 상태 등 고려 안전 급여제공≫수급자 중심 급여제공 & 프로그램 계획·운영
-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영했는지 평가하고 개선·노력하여 급여의 질 개선 노력

2.급여제공계획과 기준 근거한 급여제공

- ▲적절한 시설·장비 마련≫ 운영규정, 근로계약 준수 · 급여제공기준 충분히 숙지
- ▲급여제공계획 따라 내용·시간 준수>급여제공매뉴얼(비치) 정기적으로 교육*숙지
- ▲직원 자격증 & 업무범위, 책임 명확화≫자원봉사자 & 지역사회자원 적극 활용
- ▲매년 건강검진 & 근골격계 질환 등 관리

3.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수급자 인권 & 자기결정권 존중, 사생활 & 개인정보 비밀유지 등
- ▲잔존능력 유지·향상 위한 급여 제공>역량강화 교육 등
- ▲직원 복지향상 노력>> 인력 변경 시 급여수준이 적합하도록 인수·인계 관리
- ▲수급자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

급여제공 절차

1.이용 상담 및 계약

- ▲이용 전 상담 : 자격, 절차, 주야간(단기)보호 급여 내용, 비용 등 상담
- ▲계약기간 및 이용신청 결정, 권리 및 책임안내, 프로그램 등 관련사항 안내

2.통합사정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참여 (수급자 및 가족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병력, 생활환경 등 욕구 파악)

3.급여제공계획 수립

▲수급자 보호자 합의한 목표 수립, 문제해결을 위해 급여제공계획 수립

4.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급여 제공 실시하고 급여 제공에 대한 기록

5.**모니터링 및 재평가** ▲초기 사정 및 서비스 계획*제공에 대한 평가, 문제 발생시 계획 재수립

6.퇴소 및 적정서비스 연계

▲사망, 자진 이용종료, 적정 서비스 연계 빠 사후관리

※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 신체 및 인지상태, 욕구 등 변화에 따라 변경 계획 후 제공 가능

구분	지표별	평가내용	주 단
급여 계약	▲계약체결 및 급여내용 통보•급여계약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 종류 & 급여비용 반영 확인>불일치하는 경우 충분한 사유 작성	>충분한 사유: 수급자(보호자) 상태*요구,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종합의견 등 •급여계약통보서 전월 말일까지 공단통보	27 기관 기급 전산
	▲위험도 평가 정기적 파악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	•낙상·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 파악	17
통합	•기존수급자: 업어계시 전까지 될지 •기존수급자: 연1회(365+30일 이내) 실시 •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검증된 도구 이용(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 이용 및 저작권 유의)	기관
사정	▲욕구평가 정기적으로 파악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	•8개 항목 및 판단근거	28
	•전규구급시: 급여게시 전까지 결시 •기존수급자: 연1회(365+30일 이내) 실시 ▶필수: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 총평 ▶해당 급여직원 작성	신체, 질병, 인지,의사소통, 영양, 가족 환경, 주관적 욕구, 자원이용>단순체크리스트는 판단근거 확인	기관 기교
	개별 급여기	제공계획 수립	
급여	☑급여제공계획 수립	•필수: 급여종류, 목표, 세부목표, 필요내용,	29
제공	•신규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수립 •기존수급자: 연1회(365+30일 이내) 수립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기관
계획	•급여제공계획≫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낙상·욕창평가, 인지기능검사 반영	➤해당 급여직원 작성 ➤수급자(보호자) 설명*동의, 확인서명	刀罩
	▲급여제공자료 제공 & 설명 •욕창*낙상*탈수예방*관절구축*치매*노인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36
	학대예방 및 배변도움 등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 실시	기관



자료 ▲이동서비스 수칙 마련 & 제공

•이동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 면담

▶운전자 외 기관 직원 동승 여부확인

•이동서비스 수칙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1회 이상 설명

- 제공 >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 역할, 차량안전 수칙, 사고시 조치사항, 차량운행표
- 안전한 생활 유지하도록 급여제공 설명

40



•차량관리 정기점검 기록 확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효기간 확인

犯

41

- •이동시간 정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 면담
 - 수급자 **면달**



✓이동서비스

- •급여제공계획 작성 배경 및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보고하고
- •급여제공계획 따라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에게 교육 실시!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정급여제공!

구분	지표별	평가내용	주 단
적정 제공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적정 급여제공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 제공 ➤ 기록 •계획 변경 시 사유 기록 &제공계획 재작성하고 따라서 급여 제공 ➤ 기록(평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 충실하게 기록 ★ 급여제공직원 서명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월1회 이상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제공대장, 서명부 등) 	30 기관 기를 전신
	▲식단표 및 음식상태 •1식 3찬 이상의 주간식단표 영양사 작성 •식단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식사를 제공함 •조리실 근무직원 복장 & 위생상태 청결	33 기관 기록 현장
식사 투약 관리	▲약품관리 •약품보관함 등 잠금장치 현장 확인 •유효기한 등 분기별 1회 이상 점검*기록	•필수사항: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한, 점검자명	34 기관 기록 현장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 기능 상태 맞게 상시 식수 지원 •수급자 씹는 기능 & 소화기능 등 고려한 기능 상태에 적절한 식사지원	•투약 확인사항 숙지하는지 적정한 투약여부 ▶확인사항: 약물투약의 6원칙(정확한 약물* 용량 * 대상자 * 경로 * 시간 * 기록)	32 종사자 면당 연장 관찰
프로	▲ 프로그램 정기적 제공•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수립함>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프로그램 계획 따라	 ▶ 신체*인지기능 각각 주3회 이상 실시 ▶ 사회적응프로그램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모든 프로그램 수급자(보호자) 반기별 1회 이상 의견수렴 ● 1회 이상 반영 	37 - 기관 기급 -
그램	▲기능향상 프로그램 제공 •모든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 •프로그램 계획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 포함 주 3회 이상 실시 •모든 프로그램 수급자(보호자) 반기별 1회 이상 의견수렴 ➤ 연 1회 이상 반영 과(수급자 상태)	- 36 - 기관 기급

च प्रयास्थ्य (न च र अपा)

	▲개별적 욕구 반영한 급여제공 •개별욕구 반영한 실제 급여제공 수급자 면담 •급여 제공할 때 직원이 내용 설명하는지 면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등	31 수급자 면달
	▲ 노인인권보호 •직원이 안전하게 급여제공 하는지(상처, 낙상, 사고 등 & 안전하게 급여제공) 면담	•신체부위 등에 상처 입힌 적 있는지 관찰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 & 학대 사실 면담	43 40 수급자 면달 관합
제공 결과	▲구강관리 도움 •식사 후 양치질 도움 받음	•구강상태 확인➤구강 청결여부, 치아 없는 경우 헹굼 여부	35 - 수급자 면달 관찰
	▲등급현황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급여제공 후 수급자	신체기능상태 악화 예방 노력에 의해 갱신등급 이 유지*호전된 수급자 비율	44 기관 전산

구분 주 단 지표별 평가내용 35 ່∡가호관리 수급자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 •위관, 도뇨관, 장(요)루, 욕창 등 처치 후 图目 •간호 관리 상태가 적절한지 관찰 관리상태 41 ▲신체청결상태 도움 •수급자 구강상태 관찰 •수급자 신체청결상태 관찰 수급자 관찰 ▶혀, 치아, 틀니, 구강상태 등 ▶피부, 두발 청결, 팔다리 각질, 손발톱 등 결과평과 및 사례관리 Ϫ사례관리회의 39 42 •반기별 1회 이상 사례관리 실시≫일자, 수 •1개월 이내 회의내용 급여에 반영 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제공내용 확인 기관 TI. ▲ 급여제공 결과평가 결과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한 결과 정기적 평가 (p.42 참조) 급여제공 후 (반기별 or 연 1회 이상) ➤ 일자, 총평 또는 평가 '모니터링 및 재평가' 단계임 종합 소견, 작성자(해당 기관 직원이 작성) •평가결과 반영≫개별 급여계획 30일 이내 재작성 ▲연계기록지 제공 39 38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 제공 •성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기관 작성일자 (JE) 만족도 평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만족 도 ▲시마스 한국도 조시(유)

•대상: 수급자(보호자)

•내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5개 항목

•방법: 유선, 공단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수급자 (보호자) 유선

42

45



제5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 1 지정갱신제 개요
- ② 갱신 심사

-	49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 ※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 권 2-7(P424)Ⅱ-6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절차

유효기간

- ▲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기(3년) 고려
-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
- ▲기존 기관: 법령 시행('19.12.12)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 반영하여 갱신시기 조정 ▶ 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 ☑기관안내 및 신청: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해당 시군구 신청
- ▲서류심사: 지정요건 부합 여부 및 운영실적 심사 등 전수조사
- ▲현장실사: 평가하위, 행정처분, 노인학대 등 발생기관 선별 실사

갱신절차

- ▲종합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종합하여 최종 심사
- ▲결과통보: 종합심사 결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 ▲구제절차: 기준 미달, 서류 미제출 및 심사 거부기관 등 지정취소 대상기관 이의 신청 등 구제절차 안내



갱신 심사

심사기준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 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

지정요건

▲행정처분 내용, 시설·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등 지정 심사기준을 지정 갱신 심사 시에도 고려

평가결과

- 📈 지정 유효기간(6년) 동안 실시된 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정갱신 여부 심사
- ▲ *2회 연속 최하위등급(E) 기관의 경우 지정갱신 거부 우선 검토

재무회계 규칙

▲예결산서 보고·승인. 인건비 지출비율 등 시설 운영시 재무회계 규칙 준수여부 확인



갱신 미신청 기관 처리방안

▲휴폐업 시의 경우와 같이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및 공단자료이관 등 절차 이행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6년)			
	ļ		
장기요양기관장이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미신청		
갱신 신청			
	Ţ		
시·군·구청장이 심사 후	시·군·구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 결정	공단에 통보		
Ţ	Ţ		
시·군·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시·군·구청장이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심사결과 통보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조치 시 대안 강구		
	Ţ		
유효기간 만료될 때 장기요양기관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공단으로 이관	

제6장 현지조사제도 안내

- ① 현지조사 개요
- 2 현지조사 절차

- 53 -

현지조사 개요



🧶 현지조사 정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 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와 관련된 제반업무에 인력, 자료 등 필요한 사항 지원하고 있음

현지조사 목적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부적정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감독의 실효성 확보)
-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
- ◈시설운영 및 제공된 급여의 법령 및 각종 고시 및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해 수급권 보호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 제68조(양벌규정)
- ◈기타 :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법

현지조사 유형

- ➡청기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재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부당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등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수시조사** : 신고나 민원 접수, 급여비용 경향분석 중 법령등의 위반 혐의가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항 중 수급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조사

현지조사 절차





일 업무처리 절차

9 9 7 7 1 9	<u>en</u>	
불법.부당행위제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시·군구	 공익신고 및 민원제보 기관 청구경향분석결과 부당개연성 높은 기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관 대외기관에서 의뢰한 기관 등
현지조사	조사대상 선정	• 조사의 실효성, 시급성, 조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공단의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기관은 행정 처분 (업무정지), 벌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지급 보류, 명단 공표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
	조사결과 보고	• 공단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에 보고(통보)
부당 이득금 환수(공단)	환수예정통보	• 부당이득금 환수예정통보 ※ 의견제출 기한 부여 : 14일 이내
	환수결정통보 및 징수이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통보 및 집행(징수이관)※ 환수처분 대한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시·군·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 청문 → 처분확정 → 처분통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과태료부과
	장기요양기관 명단 등 공표	• 보건복지부, 시·군·구 홈페이지 공표 (공단 홈페이지 등 추가 공표가능)
사후관리	수사의뢰(형사고발)	질문, 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관고의·상습 거짓청구기관 등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시·군·구 관할 시·도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소송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장기요양 Start-UP 지원 매뉴얼

본 매뉴얼 내용은 관련 법령, 고시 등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1. 4.
발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5
대표전화	044-251-7691~4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요양지원부

